

강릉문화재단 정관

제정 1998. 11. 3
개정 1999. 3. 5
개정 2000. 2. 24
개정 2003. 3. 27
개정 2006. 11. 22
전문개정 2007.6.8
개정 2010. 7. 30
개정 2011. 1. 17
개정 2011. 4. 18
개정 2012. 6.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강릉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의 지원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강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명칭은 “강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재단의 사무소는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교동)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현대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지원
2.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과 지원
3.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국내외 교류와 지원
4. 지역문화행사의 개발·개최 및 지원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평생교육활동의 지원
6.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①재단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명

②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시 상근할 수 있다.

제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이사) ①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강릉시 소관부서 국장

③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추천한 인사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추천된 인사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명과 강릉시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②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상임이사,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임원이 있을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3장 이 사 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재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회의)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요구 할 때
3.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③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의결제척)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9조(회의록) ①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이사의 출석사항
2. 부의안건과 내용
3.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이사 1명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구분) ①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제24조(경비의 충당)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또는 재단의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공고)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항을 강릉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서등의 제출) ①재단은 매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5월말 까지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에게 회의 개최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및 구성인원

제30조(설치 및 정원)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부서의 조직) 사무부서의 조직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자문기구)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수당의 지급 등)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남은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의 남은재산은 강릉시에 귀속된다.

제3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1998. 11. 3)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전면개정 정관에 의거 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원의 임기 적용은 제 11조(임원의 임기)규정에 의한다.
(2007. 6. 8)

제3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거 선임된 임원은 일부 개정 정관에 의거 사임된 것으로 본다.(2011. 1. 17)